

문 1.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혼(離婚)은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이혼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이혼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용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①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의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기〉

- ㄱ.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기 부인에게 생활비를 빠짐없이 보내어 부양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 ㄴ.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ㄷ.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만한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건강상·직업상·경제상 또는 자녀의 교육상 필요하여 별거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ㅁ. 을의 남편 갑이 직장의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어 을이 이혼을 제의하였으나 갑이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을은 이혼을 할 수 없다.

- ① $\neg$, $\perp$
② $\sqsubset$, $\square$
③ $\neg$, $\perp$, $\sqsubset$
④ $\neg$, $\sqsubset$, $\square$
⑤ $\neg$, $\perp$, $\sqsubset$, $\square$

문 2. 다음 두 <자료>를 종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고려시대의 신분은 크게 양신분(양인)과 천신분(천민)으로 나뉘었다. 양인과 천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역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양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국역을 지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서 양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반면, 천민은 국역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양인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자료 2>-

고려시대에 부곡은 일반 군현과 구별되는 특수행정구역이었다. 부곡은 전쟁포로의 집단 수용에서 기원하였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 또한 부곡에 사는 사람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하여 조세(租稅)·공부(貢賦)·역역(力役)의 의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부곡 고유의 국역을 추가로 져야만 했다. 따라서 부곡민은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 ① 부곡은 사회적으로 천시되는 천민의 집단 거주지였다.
- ② 부곡민은 국역을 부담하더라도 관리가 될 수 없었다.
- ③ 부곡민에게 국역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 ④ 부곡민은 천민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
- ⑤ 부곡민은 일반 양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 하층 양인이었다.

문 3.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통계는 1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는다. 2000년부터 시작된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나는 장래의 인구를 좀 더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문제가 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 못지 않게 인구의 국제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작성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이하 ‘2005년 통계’)를 보면 2005년 입국자는 56만 2천명(내국인 29만 6천명, 외국인 26만 6천명), 출국자는 64만 3천명(내국인 37만 6천명, 외국인 26만 7천명)이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내국인 출국자의 출국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이 40%로 가장 많았고, 유학이 30%, 사업차 방문이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 기>

- 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적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통계를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 ㄴ. ‘2005년 통계’에 의하면, 국제인구이동 수치는 8만 1천 명의 적자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ㄷ. ‘2005년 통계’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내국인 출국자 중 25만 7천 2백명이 관광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19만 2천 9백명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발표하는 통계를 통해서 각국의 국제인구이동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 ㅁ.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내국인 출국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 국제인구이동 수지란 국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것임.

- ① $\neg$
② $\neg, \sqsubset$
③ $\neg, \sqsubset$
④ $\neg, \sqsubset, \square$
⑤ $\sqsubset, \sqsubset, \square$

문 4. <보기 1>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준이 되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 2>는 대학의 정화구역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내용 중 일부이다. <보기 1>의 원칙과 <보기 2>의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순서대로 적용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고 한다. (A)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B) 방법의 적정성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C)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더욱 완화될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D)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보기 2> -

7.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와 달리,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는 극장 이용 여부를 대학생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참작하여 대학생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정화구역 안에서까지 일률적으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 나.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 내에서 유해환경을 방지하여 그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다. 극장영업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극장영업의 부정적 작용가능성을 차단하는 합리적 조치이다.
- 르. 극장 유형, 학교 종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학교 주변지역에서 극장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상충하는 공·사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u>A</u>	<u>B</u>	<u>C</u>	<u>D</u>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20	20	20	20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24	24	24	24
25	25	25	25
26	26	26	26
27	27	27	27
28	28	28	28
29	29	29	29
30	30	30	30
31	31	31	31
32	32	32	32
33	33	33	33
34	34	34	34
35	35	35	35
36	36	36	36
37	37	37	37
38	38	38	38
39	39	39	39
40	40	40	40
41	41	41	41
42	42	42	42
43	43	43	43
44	44	44	44
45	45	45	45
46	46	46	46
47	47	47	47
48	48	48	48
49	49	49	49
50	50	50	50
51	51	51	51
52	52	52	52
53	53	53	53
54	54	54	54
55	55	55	55
56	56	56	56
57	57	57	57
58	58	58	58
59	59	59	59
60	60	60	60
61	61	61	61
62	62	62	62
63	63	63	63
64	64	64	64
65	65	65	65
66	66	66	66
67	67	67	67
68	68	68	68
69	69	69	69
70	70	70	70
71	71	71	71
72	72	72	72
73	73	73	73
74	74	74	74
75	75	75	75
76	76	76	76
77	77	77	77
78	78	78	78
79	79	79	79
80	80	80	80
81	81	81	81
82	82	82	82
83	83	83	83
84	84	84	84
85	85	85	85
86	86	86	86
87	87	87	87
88	88	88	88
89	89	89	89
90	90	90	90
91	91	91	91
92	92	92	92
93	93	93	93
94	94	94	94
95	95	95	95
96	96	96	96
97	97	97	97
98	98	98	98
99	99	99	99
100	100	100	100

- | | | | | |
|---|---|---|---|---|
| ① | ㄱ | ㅈ | ㄴ | ㄹ |
| ② | ㄴ | ㅈ | ㄱ | ㄹ |
| ③ | ㄴ | ㄱ | ㅈ | ㄹ |
| ④ | ㄴ | ㄱ | ㄹ | ㅈ |
| ⑤ | ㅈ | ㄴ | ㄹ | ㄱ |

문 5. 갑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기준일은 2002년 2월 20일이고, 최초 보상계획공고일은 2004년 7월 28일이다. 갑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와 그 대책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서 주택의 소유자란 주택의 현재 소유자를 가리키며, 주택 소유자의 전입일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점과 같다. 또한 거주란 전입신고를 한 상태를 의미한다.)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는 이주자택지 또는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분양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을 계속 소유한 채 최초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자는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는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업지구 내 허가주택의 세입자는 전용면적 60m^2 이하 국민임대아파트 또는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의해 수립되는 대책임.

- ① 전입일이 2002년 5월 4일이고, 전출일이 2005년 5월 18일인 무허가주택 소유자 A는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 ② 허가주택을 임차한 B의 전입일이 2001년 12월 30일이고, 전출일이 2004년 9월 19일인 경우, B는 전용면적 60m^2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 ③ 전입일이 2000년 4월 18일이고, 전출일이 2003년 8월 28일인 허가주택 소유자 C는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다.
- ④ 전입일이 2000년 4월 6일이고, 전출일이 2004년 5월 23일인 허가주택 소유자 D는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만 받을 수 있다.
- ⑤ 허가주택을 임차한 E의 전입일이 2001년 8월 18일이고, 전출일이 2004년 6월 30일인 경우, E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문 6.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재정난을 겪고 있던 A 회사는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직후 직원의 직장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었으나, 설문지는 직장만족도에 관련된 문항을 비롯하여 직위와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의 다양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오래 전부터 직원들이 회사에 불만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임원진은 직원들의 직장만족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구조조정 전에 시행된 유사한 설문조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직장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 <보 기> —

- ㄱ. 해고된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 ㄴ. 회사에 큰 기대가 없어서 불만이 적었던 직원 대부분이 해고되었다.
- ㄷ. 구조조정 후 실시된 설문조사의 일부 문항들이 응답자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 ㄹ. 과거 직장만족도 설문조사는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지금보다 훨씬 고조되었을 때 시행되었다.
- ㅁ. 구조조정 후에 남은 직원들은 비록 회사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이 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ㄴ, ㅁ

문 7.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체약국이 아닌 국가가 다자조약(多者條約)에 가입을 희망하면서 다자조약의 일부 규정에 대해 행한 유보선언에 대하여 모든 당사국이 전원 일치로 반대한 경우, 그 국가는 가입국이 되지 못한다. 다만 체약국 중 한 국가라도 유보에 동의하면, 유보에 동의한 국가(유보동의국)와 유보를 희망하는 국가(유보국) 사이에서 유보 내용이 조약에 반영된다.

반면 체약국 중 어떤 국가가 유보에 반대하면 유보를 반대한 국가(유보반대국)와 유보국 사이에서 조약은 일단 유보 없이 발효된다. 다만 이러한 유보반대국이 조약의 발효에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유보국은 그 유보반대국과의 관계에서 당해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는다.

A국, B국, C국이 체약국인 다자조약에 D국이 새로 가입하면서 제7조를 자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보하였다. D국의 유보에 대하여 A국은 동의하였고, B국은 유보만 반대하였고, C국은 유보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조약의 발효에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

※ 조약의 유보란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시에 특정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자국에 적용하려는 의사
표시를 말함.

- <보 기>

- ㄱ. D국과 B국, D국과 C국 간에는 조약이 적용된다.
- ㄴ. D국과 A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A국과 C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ㄹ. D국과 A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고, D국과 B국 간에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ㅁ. B국과 C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neg$
② $\perp$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equiv$
⑤ $\equiv, \square$

문 8. 다음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보기 2>에서 제시된 내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보기 1>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〇〇조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조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제〇〇조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

제〇〇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〇〇조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제〇〇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〇〇조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조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 <보기 1>

상황 1: 국회 내에서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65%, 20%, 1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 2: 국회 내에서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35%, 55%, 1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 3: 국회 내에서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80%, 15%, 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 단, 국회의원들은 항상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르고, 무효표와 기권은 없으며 3당이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음.

- <보기 2>

- 가. 여당만 반대하는 경우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
- 나. 제1야당만 찬성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다.
- 다. 여당만 반대하는 경우 조사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다.
- 라. 여당만 반대하는 경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국회를 재개할 수 있다.
- 마. 제1야당의 요구만으로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 ① 가 - 상황 1, 2
② 나 - 상황 2, 3
③ 다 - 상황 1, 2
④ 라 - 상황 1, 2
⑤ 마 - 상황 2, 3

문 9.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표>의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투표거래’란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집단이 과반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vote)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하나의 대안을 대상으로 과반수 투표를 하는 경우 갑, 을, 병 세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대안에만 찬성한다. 그러나 투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안이 채택되는 대가로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지 않는 대안을 지지할 수 있다. 즉, 갑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을 찬성해 준 을에게 그 대가로 자신은 선호하지 않으나 을이 선호하는 대안을 찬성해 주는 것이 투표거래이다.

<표>

순편익 \ 대안	대안 A	대안 B	대안 C	대안 D	대안 E
갑의 순편익	200	-40	-120	200	-40
을의 순편익	-50	150	-160	-110	150
병의 순편익	-55	-30	400	-105	-120
전체 순편익	95	80	120	-15	-10

- ① 투표거래를 하지 않는 과반수 투표의 경우에도 대안 A, B, C는 채택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이 투표거래를 한다면 대안 A와 대안 C가 채택될 수 있다.
- ③ 갑, 을, 병이 투표거래를 한다면 대안 A, B, C, D, E가 모두 채택될 수 있다.
- ④ 대안 D와 대안 E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을과 병이 투표거래를 해야 한다.
- ⑤ 대안 A와 대안 E가 채택되는 것은 전체 순편익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 10. 다음 <보기 1>의 유형에 알맞은 것을 <보기 2>에서 골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A형 : 어느 모임에서나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외향적이고 활발하여 자신의 명성을 과업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이들의 핵심 욕구는 인정과 칭찬이다.
- B형 : 남들의 진실한 관심과 존중을 원한다.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를 구축하고 남의 얼굴을 익히는 것에 집중한다. 이들의 핵심 욕구는 친밀과 조화이다.
- C형 : 감정은 주관적이므로 객관성을 왜곡시킨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신의 비이성적 행위가 목표달성을 방해할까 두려워한다. 이들의 핵심 욕구는 정보와 정확성이다.
- D형 : 타인을 지도하고 통제하려는 내적 욕구가 강하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들은 목표달성을 원한다. 결과만을 놓고 성공 여부를 측정하려 한다. 이들의 핵심 욕구는 결과와 성취감이다.

<보기 2>

- ㄱ. 게임을 할 때, 이기고 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 ㄴ. 게임에서는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ㄷ. 게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
- ㄹ. 게임을 할 때, 이기고 지는 것보다 협동과 우정이 중요하다.

	A형	B형	C형	D형
①	ㄱ	ㄹ	ㄴ	ㄷ
②	ㄱ	ㄹ	ㄷ	ㄴ
③	ㄹ	ㄱ	ㄷ	ㄴ
④	ㄹ	ㄴ	ㄷ	ㄱ
⑤	ㄹ	ㄷ	ㄴ	ㄱ

문 11. A국은 총액벌금형제도(總額罰金刑制度)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일수벌금형제도(日數罰金刑制度)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도입 후에 예상되는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총액벌금형제도> —

벌금형이란 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그 침해의 방법 및 양이 금전으로 표시되는 형벌이다. 벌금은 피고인(범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제3자가 대신 부담할 수는 없고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벌금액은 5만원 이상이다. 상한액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범죄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한다. 이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노역장에 수용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벌금의 납입을 대체하는 처분(노역장유치)이다. 따라서 총액벌금형제도는 실질적으로 재산(벌금)형을 자유(징역)형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일수벌금형제도> —

일수벌금형제도는 우선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日數)를 정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일수당 정액(定額)을 결정한 다음, 일수에 일수당 정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폭행죄를 범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자인 갑과 가난한 을이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동일한 벌금액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한다. 그러나 일수벌금형제도에 의하면 갑과 을은 범행의 경중이 동일하므로 일수는 동일하게 되지만, 갑이 을보다 일수정액(日數定額)이 커져서 결국 벌금액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 ① 일수벌금형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시행 하에서 채택되는 경우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② 범죄행위 후 가난한 제3자를 범인으로 허위 자수하도록 하여 고액의 벌금액 산정으로부터 도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일수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 ④ 총액벌금형제도 하에서 부자인 갑과 달리 가난한 을은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나, 일수벌금형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 ⑤ 피고인의 수입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수정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의 제도에 비하여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벌금총액은 증가한다.

문 12. 다음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주식소유의 금지 및 회사 상호간의 주식소유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〇〇조 자회사는 '자기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〇〇조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〇〇조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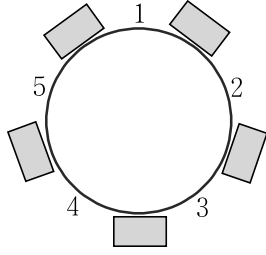
※ 발행주식총수: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

- ①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고 B회사도 C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A회사가 B회사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C회사 주식의 합계가 C회사 주식의 51%인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A회사는 C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C회사는 A회사 주식의 15%를 소유하는 경우, A회사와 C회사가 소유하는 상대방 회사의 주식은 각각 의결권이 없다.
- ④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와 C회사 주식의 7%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8%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하는 B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⑤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15%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문 13. 원형테이블에 번호 순서대로 앉아 있는 다섯 명의 여자 1, 2, 3, 4, 5 사이에 다섯 명의 남자 A, B, C, D, E가 한 명씩 앉아야 한다. 다음 <조건>을 따르면서 자리를 배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 건>—

- A는 짝수번호의 여자 옆에 앉아야 하고 5의 옆에는 앉을 수 없다.
- B는 짝수번호의 여자 옆에 앉을 수 없다.
- C가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 E는 3 옆에 앉을 수 없다.



- ① A는 1과 2 사이에 앉을 수 없다.
- ② D는 4와 5 사이에 앉을 수 없다.
- ③ C가 2와 3 사이에 앉으면 A는 반드시 3과 4 사이에 앉는다.
- ④ E가 1과 2 사이에 앉으면 C는 반드시 4와 5 사이에 앉는다.
- ⑤ E가 4와 5 사이에 앉으면 A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앉는다.

문 14. A는 잊어버린 네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려고 한다. 비밀번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단서가 다음의 <조건>과 같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은?

—<조 건>—

- 비밀번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숫자도 소수가 아니다.
- 6과 8 중에 단 하나만 비밀번호에 들어가는 숫자다.
- 비밀번호는 짝수로 시작한다.
- 골라 낸 네 개의 숫자를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다.
- 같은 숫자는 두 번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 ① 비밀번호는 짝수이다.
- ② 비밀번호의 앞에서 두 번째 숫자는 4이다.
- ③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번호는 모두 세 개가 있다.
- ④ 비밀번호는 1을 포함하지만 9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번호 중 가장 작은 수는 6410이다.

문 15. 다음 제시문의 (가) 또는 (나)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이 신념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소수 외국인에 대한 다수 내국인의 횡포를 막으려는 이성의 소리로 나타난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발현된다.

(나) 법 조항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집행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권리는 아니지만 금지되어서도 안 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자유는 개인이 권력에 요구하는 것이지, 권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겐 정치적 책임이나 역사에 대한 책임만이 철저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의 남용이나 공직을 이용한 부정 부패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보 기>—

- 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면서 위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 ㄴ. 민족주의적 성향의 사회단체를 결성하거나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 ㄷ.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기호를 고려하여 시내 중심가의 보신탕 식당 영업을 제한하는 것
- ㄹ.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영업을 금지하되, 영세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수용하여 인근 공설운동장 부지를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것
- ㅁ.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총독부의 관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

- ① ㄱ, ㄹ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문 16. 다음 규정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A광역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규정>

면허 대상	우선 순위	내 용
택시 운전자	1	◦ 10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 중인 자 ◦ 17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운수회사에서 10년 이상 운전 중인 자
	2	◦ 8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 중인 자
	3	◦ 10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 중인 자

- ①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은 개인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 준수성, 숙련성, 무사고 운전경력 등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 ②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운전자는 근무하던 택시회사가 폐업할 경우 위의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 ③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④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운전자의 직장이동을 어렵게 하여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⑤ 위 규정에 의하면 9년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4년 근속한 자가 우선순위 부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문 17. 다음의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김과장: 어이, 이과장. 한 톱 내야지. 자네 팀이 올해도 1등이야. 성과급 얼마 나왔어?

이과장: 아, 왜 이러시나? 다 알면서 민망하게시리.(웃음)

박과장: 이과장, 자네 팀은 당연히 민망해 해야지.(웃음) 저 김과장네 봐. 드러나지도 않는 업무 아무리해 봐야 뭐해. 머리만 빠진다고.(웃음) 그저 자네 팀처럼 건수로 평가 받는 게 그만이지. 평가기준을 보니까 민원처리는 건수가 그대로 성과지표가 되던데?

이과장: 박과장, 자네도 할 말 없을 텐데? 솔직히 자네 팀도 팀원들이 일을 잘한 거지, 자네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성과급만 거저먹은 거 아냐? 따지고 보면 오늘 한 톱 낼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네지.(웃음)

박과장: 어허, 이 사람. 예산절감만큼 여기저기서 욕먹고 골치 썩는 일이 어딴다고 그래? 자네가 잘 몰라서 그래.

김과장: 빨리 팀을 옮기든 해야지 원. 잘해 봐야 티도 안나고 문제 생기면 욕만 먹고 말이야. 팀별 업무 특성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니 뭐가 제대로 되겠냐고. 우리 팀은 도대체 뭘 성과로 봐야 한다는 거지?

- ① 개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 ② 업무 성격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 ③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량평가의 비중을 높인다.
- ④ 평가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강화한다.
- ⑤ 각 팀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담당자가 참고하도록 한다.

문 18. 다음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기>의 사례를 분석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2·3차적 측면에서 잠재적 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1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이다. 즉, 가해자는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의 각종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속한 보복과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보복과 피해회복을 실현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문명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보복을 대행하게 되었다.
- 나. 2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그 구성원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 이에 국가는 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였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범죄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범죄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범죄자를 치료·교육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는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
- 다. 3차적 측면은 피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국가는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으로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그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현실적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에 각종 구조와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는 현실적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각종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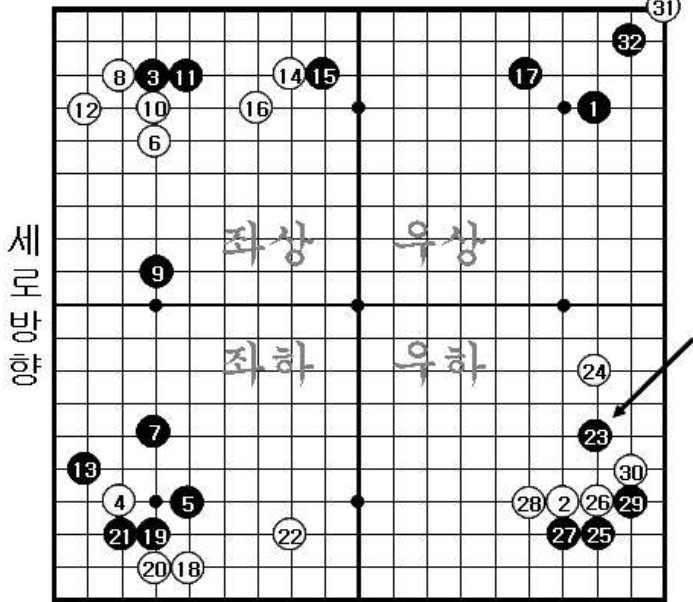
갑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자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법의 형량을 가중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그 후 아동 B를 성폭행한 A가 B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 A는 비밀리에 피해자와 부모를 만나 고소를 취하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찰은 A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B를 대면시키려 하였지만, 겁에 질린 피해자는 대질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 B의 부모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아이의 장래에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A가 처벌받는다 하여도 직접 우리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합의금이라도 받아 아이의 치료비에 보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취하하면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 경찰과 검사는 수사를 계속하여 A를 기소하였다. 결국 ㉣ 피해자는 A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해자와 그 이웃사람들이 가해자의 평소 악행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였다. 사건을 맡게 된 ㉦ 법관은 탄원서를 고려하고 위의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A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부과하였다. ㉧ B는 자폐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지만 그의 부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를 할 수 없었다. 국가는 소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지만 ㉨ 치료비로는 상당히 부족했다.

- ① ㉠과 ㉡는 1차적 측면에 대한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② ㉢과 ㉦는 2차적 측면에 대한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③ 국가가 피해자를 대행하게 되면서 2차적 측면이 부각되어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④ ㉤와 ㉦를 종합하여 볼 때, 3차적 측면이 1차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⑤ ㉡, ㉣, ㉧, ㉨와 ㉢, ㉦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형사사법 제도는 1·3차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2차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1·2·3차적 측면의 균형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많다.

문 20. <보기>의 악보를 바둑판에 두어 보았다. 그런데 실수로 두 알을 잘못된 자리에 놓았다. 이에 해당되는 바둑판을 다음에서 고르면?

<그 림>

가로방향



(악보 예제)



문 19. 위와 같이 악보로 옮길 때 적용되는 규칙과 그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7. 바둑판의 가로방향은 맨 왼쪽부터 ‘도 - 레 - 미 - 파...’ 순으로 계속해서 음을 높인다.

나. 각 음표 줄기의 위치와 방향은 바둑돌이 바둑판의 ‘좌상, 좌하, 우상, 우하’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ㄷ. 바둑판의 세로방향은 맨 위부터

○를 맨 처음으로 하고,



순서로 음표의 모양을 결정한다.

ㄱ. 위 악보 중 23번에 해당되는 음표는 ‘’이고 음계는 ‘미’이다.

※ 음표의 줄기는 다음의 ‘동그라미’ 안에 해당되는 부위를 말함 ‘’

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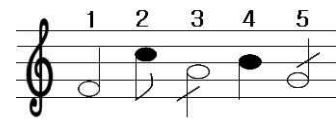
② $\neg, \sqcup$

③ $\sqsubset, \sqsup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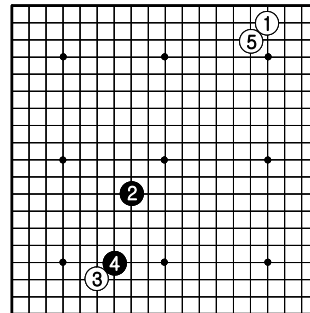
④ $\neg, \sqsubset, \sqsupset$

⑤ $\sqsubset, \sqsubset, \sqsub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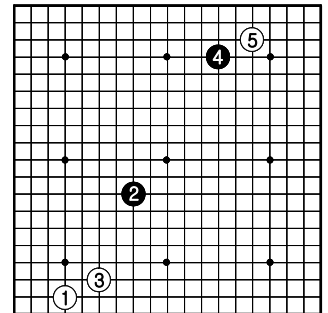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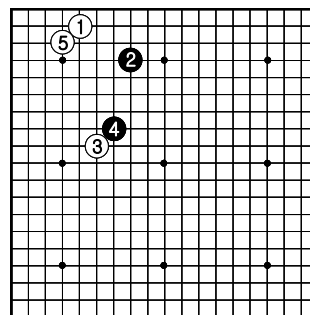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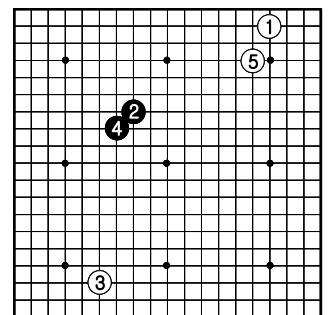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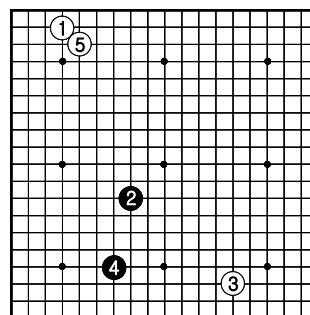
③



④



⑤



문 21.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대 국제법은 국가주권 개념을 그 기저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 간의 모든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국가는 그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칙을 존중하는 법실증주의적 합의이론에 균열이 생긴 것은 국제공동체의 관념이 싹트면서부터이다. 그 균열은 과거 국제법의 기저이던 국가주권 개념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되었다. 현재의 국제법 질서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은 대세적 의무가 되었다.

- ※ 법실증주의: 법학에서 실정법(현재 제정되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입장
- ※ 대세적 의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무

유럽에 있는 Y국은 소수집단 A의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인종청소라는 대규모 살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Y국의 행위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유럽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역안보기구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도 아래 무력개입을 하였다. Y국은 NATO 등의 무력개입이 자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① 인권존중의 대세적 의무화에 부응하려면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관한 조약을 해당 국가와 체결해야 한다.
- ② 현재의 국제법 질서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 ③ 국제공동체 관념이 싹트면서부터 한 국가 내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 ④ 법실증주의적 합의이론에 의하면 Y국의 동의가 없는 한 유럽의 다른 국가 및 NATO는 Y국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 ⑤ 근대 국제법의 국가주권 관점에서 보면 Y국의 항의는 정당하다.

문 22. 다음은 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문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은 이기론(理氣論)의 틀 속에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윤리적 행위의 능력을 지닌다는 신념(성선설)’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었다. 인성(人性)에 대해 논하면서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도덕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인간의 정신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단순한 규범윤리의 조목에 그칠 뿐이다. 한편, 인간의 정신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럴 듯하게 해명하면서도 인간이 지니는 도덕능력의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리학의 기본이념을 망각한 논리의 맹목적인 추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은 정신현상의 발현과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구체적인 현상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소당연(所當然)의 원리[理]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퇴계는 선천적 도덕능력의 근거가 되는 이(理)의 자발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그것의 발현에는 항상 기(氣)의 작용이 수반한다고 설명하였다.

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론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사단칠정론이란 결국 심리현상의 발현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심리철학적 연구와, 성선설의 본질을 계승하여 인간의 도덕적 존엄성을 천명하고자 하는 윤리적 신념을 하나의 이론체계로 융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융화는 퇴계와 율곡 어느 쪽에서도 완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한 채 각각 이론과 당위의 한 측면에서 미비점을 남기고 말았다.

— <보 기> —

- ㄱ. 사단칠정론은 이기론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 ㄴ. 퇴계는 이(理)의 자발성을 견지하여 그것 자체가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 ㄷ. 율곡은 정신현상의 발현과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그 근거인 도덕적 소당연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 ㄹ. 사단칠정론은 도덕능력의 근거와 정신현상의 발현과정을 함께 규명하려 하였다.
- ㅁ. 사단칠정론의 최대 쟁점은 인간의 선천적인 윤리적 행위능력에 근거한 도덕적 존엄성의 유무였다.

- ① ㄷ
- ② ㄱ
- ③ ㄱ, ㄷ
- ④ ㄷ, ㅁ
- ⑤ ㄴ, ㄷ, ㅁ

문 23. 다음 상황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 A국에서는 경유 및 LPG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경유의 세율을 올린 이유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유는 LPG에 비하여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고 질소산화물도 10배 가량 배출한다.
- A국 정부는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 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법률은 별다른 단서 규정 없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택시, 버스, 화물차’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유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경유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A국의 택시는 현재 뱅형(경유 사용)을 제외하고는 LPG 택시 뿐이다. A국에서는 갑회사, 을회사, 병회사가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갑회사가 유일하게 경유승용차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승용차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현재 LPG택시 운전자의 70%가 경유택시로 바꾸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유택시란 뱅형 택시를 제외한 승용차형 경유택시를 말함.

- ①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뱅형 택시와 경유택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 ②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 ③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뱅형 택시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 ④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승용차 시장에서 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⑤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내린 판단으로 틀린 것은?

- A. 일반법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며, 특별법은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B.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한다.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C.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사무’는 통속적으로 ‘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말한다.
-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이를 국가배상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 E. ‘중대한 과실(중과실)’이란 사회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 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한 곳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꽂이를 버린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 ② 지방공무원 갑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고의로 을을 폭행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세청 직원 갑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도중 구경나온 이웃 주민 을에게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갑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을이 공무원 병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정을 다치게 한 경우, 정은 을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던 국가공무원 갑의 잘못으로 을 소유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5. 아래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되거나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나. 매월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1)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경로연금, 장애수당, 양육비, 의료비,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다. 가구별 매월 최저생계비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2	70	94	117	135	154

라.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① 유치원생 아들 둘과 함께 사는 A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만원이고, 구멍가게에서 월 1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양육비로 월 2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 ② 부양능력이 있는 근로소득 월 60만원의 조카와 살고 있는 B는 실제소득 없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6만원이며, 의료비로 월 30만원을 지출한다.
- ③ 중학생이 된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C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4만원이며, 근로소득으로 월 80만원이 있지만, 두 딸의 수업료로 각각 월 11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 ④ 외아들을 잃은 D는 어린 손자 두 명과 부양능력이 있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 D는 근로소득이 월 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8만원이며, 의료비로 월 1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 ⑤ 군대 간 아들 둘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 딸을 둔 E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6만원이며, 월 평균 6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지만, 딸의 수업료로 월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문 26. 다음 중 <보기 1>의 법률조항과 <보기 2>의 주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가. 제○○조 정기간행물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나. 제○○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 다. 제○○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신문 발행 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100분의 5 이상 지분 소유주주 등을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보기 2>—

A. 반대론

- 가. 다른 사기업과 달리 경영 및 투자자 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나. 신문의 방송진출을 막아 언론활동의 자유, 신문사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 다.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라. 공정보도는 언론인의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다.
- 마. 법적으로 공정보도를 강요하는 것은 신문의 고유한 논조를 획일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 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검열에 해당된다.

B. 찬성론

- ㉠ 신문사는 다른 사기업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 ㉡ 신문 본연의 책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 ㉢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공익적 장치이다.
- ㉣ 독자와 광고주가 신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 ㉤ 신문사는 보도 전문 방송채널을 겸영할 수 없을 뿐, 위성방송 등의 주식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다.
- ㉥ 언론보도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A

B

- | | |
|------------|------|
| ① ㄱ - 나, 바 | ㉠, ㉡ |
| ② ㄱ - 라, 마 | ㉠, ㉢ |
| ③ ㄴ - 나, 다 | ㉠, ㉤ |
| ④ ㄴ - 가, 다 | ㉠, ㉥ |
| ⑤ ㄷ - 가, 라 | ㉠, ㉥ |

문 27. 갑은 고려시대 정3품 관리이며, 중등전 논 100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차경(借耕)하도록 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갑의 연간 수입을 옳게 계산한 것은?

<자료 1>

- 고려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 지급, 조세 수취 등을 위해 논과 밭을 모두 상등전·중등전·하등전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 고려시대 농민은 자기 소유지를 경작한 경우 연간 생산량의 1/10을 국가에 조세로 납부했고,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차경한 경우는 연간 생산량의 1/2을 토지 소유자에게 소작료로 납부하였다.
- 고려시대 관리는 관직복무 대가로 녹봉 뿐만 아니라, 전시과 제도에 의거하여 농민이 납부할 조세를 대신 수취할 권리를 받았다. 녹봉 액수와 전시과에 의거하여 조세를 수취할 토지의 지급면적은 품계에 따라 차등 있게 정해졌다.
- 고려시대 관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자료 2>

녹봉 및 전시과 토지 지급 기준

품계	녹봉액 (연간)	토지지급 면적
⋮	⋮	⋮
종2품	353석	85결
정3품	300석	80결
종3품	246석	75결
정4품	200석	70결
⋮	⋮	⋮

토지 1결당 연간 생산량

토지 지목	토지 등급	생산량
논	상등전	18석
	중등전	14석
	하등전	10석
밭	상등전	9석
	중등전	7석
	하등전	5석

- ①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하등전 밭이면, 740석

②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중등전 밭이면, 1,280석

③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상등전 밭이면, 1,720석

④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하등전 논이면, 1,080석

⑤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상등전 논이면, 1,740석

문 28. A시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B시에서 오후 3시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한다. <표 1>과 <표 2>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전 11시에 회사에서 출발하여 회의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한 방법 중 최저운임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표 1> 교통수단별 소요시간과 운임(도시 내)

A시		교통 수단	소요 시간(분)	운임 (원)	B시		교통 수단	소요 시간(분)	운임 (원)
출발지	도착지				출발지	도착지			
회사	공항	a	40	1,500	공항	회의장	a	35	1,500
		b	30	6,000			b	25	5,000
		c	30	1,500			c	35	2,000
	고속버스 터미널	a	25	1,000	고속버스 터미널	회의장	a	50	2,000
		b	15	3,000			b	30	6,000
		c	20	1,000			c	30	1,500
	역	a	30	1,000	역	회의장	a	30	1,000
		b	20	4,000			b	20	4,000
		c	15	1,000			c	35	2,000

<표 2> 교통수단별 소요시간과 운임(도시 간)

구간	교통수단	소요시간(분)	운임(원)	비고
A시 → B시	비행기	90	60,000	탑승수속시간 35분 추가 소요
	고속버스	210	40,000	
	기차	140	50,000	

- 최저운임 도착방법

① c→기차→a

② a→고속버스→c

③ a→비행기→c

④ a→기차→a

⑤ c→고속버스→c
- 최단시간 도착방법

c→기차→b

c→기차→b

b→비행기→c

c→비행기→b

b→비행기→b

문 29. 다음 제시문의 조건에서 가능한 최종투표 결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국이 B국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했다고 하자. B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대안, B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반군을 지원하는 대안, B국 정부와 친선관계를 모색하는 대안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선택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안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1차 투표에서 세 가지 대안 중 두 가지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1차 투표에서 선택된 대안과 나머지 대안을 대상으로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다음은 각 집단의 정책 선호 순위와 구성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선호내용>

집단	선호 순위			구성비율(%)
	1	2	3	
X	전쟁선포	반군지원	친선모색	10
Y	반군지원	친선모색	전쟁선포	45
Z	친선모색	전쟁선포	반군지원	45

※ 구성비율은 전체에서 그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집단 구성원은 동일한 선호를 가지며 선호순위에 따라 투표한다.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다고 가정함.

<보 기>

ㄱ. 친선모색안이 전쟁선포안에 대하여 90% 대 10%로 채택된다.

ㄴ. 반군지원안이 친선모색안에 대하여 55% 대 45%로 채택된다.

ㄷ. 반군지원안이 전쟁선포안에 대하여 55% 대 45%로 채택된다.

- ① ㄱ

② ㄴ
- ③ ㄷ

④ ㄱ, ㄴ
- ⑤ ㄱ, ㄷ

문 30. 다음에 근거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소득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i) 자원봉사제도(무료로 법률자문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변호사를 활용), (ii) 유급법률구조제도(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신설하고 변호사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 (iii) 법률보호제도(정부가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대신 지불) 등의 세 가지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정책목표는 (i) 비용의 저렴성, (ii) 접근용이성, (iii) 정치적 실현가능성, (iv)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이다. 각 정책대안과 정책목표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대안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경우는 (+)로, 불리한 경우는 (-)로 표시한다. 단, 유·불리 정도는 동일하다.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의 경우, ‘0’은 해당 정책목표를 무시하는 것을, ‘1’은 해당 정책목표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대안과 정책목표의 상관관계>

정책목표	가중치		정책대안		
	A안	B안	자원봉사제도	유급법률구조제도	법률보호제도
비용저렴성	0	0	+	-	-
접근용이성	1	0	-	+	-
정치적 실현성	0	0	+	-	+
전문성	1	1	-	+	-

<보 기>

ㄱ. 전문성 면에서는 유급법률구조제도가 자원봉사제도보다 더 좋은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ㄴ. A안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유급법률구조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ㄷ. B안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자원봉사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ㄹ. A안과 B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정책대안 비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31. 다음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실종의 신고) ① 부재자(不在者)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전지(戰地)에 임한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危難)을 당한 자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또는 항공기의 추락 후 6월간, 전쟁종지(戰爭終止) 후 또는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조(공시최고)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월 이상의 공고를 하여 부재자 및 부재자의 생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상속개시의 시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直系卑屬)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直系尊屬)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계혈족(傍系血族)은 피상속인의 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등을 말한다.

- ① 갑이 사망한 경우, 사망선고를 한 때에 갑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② 갑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③ 갑에게는 아버지 A, 자녀 B와 C가 있는데,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상속재산은 A가 아니라 B와 C에게 상속된다.
- ④ 사망한 갑에게 자녀 A를 임신한 부인 B와 어머니 C가 있는 경우, A가 출생하면 C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⑤ 2001년 1월 10일 항공기 추락으로 행방불명된 갑에 대해 부인 A가 2006년 3월 15일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법원이 2006년 9월 30일 실종선고를 한 경우, 갑은 2001년 7월 10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문 32. 다음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한다.

제○○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조(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천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분의 15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100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8년: 100분의 70
2. 2009년: 100분의 80
3. 2010년: 100분의 90

- ① 각각 단독세대주인 갑(공시가격 25억원 주택소유)과 을(공시가격 30억원 주택소유)이 2008년 5월 31일 혼인신고 하여 부부가 되었다. 만약 혼인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이 각각 납부하였을 2008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는 혼인 후 납부하는 세액과 동일하다.
- ② 2008년 12월 31일 현재 A의 세대별 주택공시가격의 합산액이 15억원일 경우 재산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의 종합부동산세액은 400만원이다.
- ③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④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적용비율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려고 했다.
- 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기혼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33 ~ 문 34]

<상 황>

<사업별 기간 및 소요예산>

A사업 : 총 사업기간은 2년으로, 첫 해에는 1조원, 둘째 해에는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B사업 : 총 사업기간은 3년으로, 첫 해에는 15조원, 둘째 해에는 18조원, 셋째 해에는 2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C사업 : 총 사업기간은 1년으로, 총 소요예산은 15조원이다.

D사업 : 총 사업기간은 2년으로, 첫 해에는 15조원, 둘째 해에는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E사업 : 총 사업기간은 3년으로, 첫 해에는 6조원, 둘째 해에는 12조원, 셋째 해에는 2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도별 가용예산>

올해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위의 5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래와 같다.

(단위 : 조원)

1차년도(올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	24	28.8	34.5	41.5

<조 건>

- (1) 모든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완결될 때까지 중단할 수 없다.
- (2) 5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당해 사업년도에 남아도 상관없다.
- (3) 각 사업년도의 예산은 이월될 수 없다.
- (4) 모든 사업을 향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완결한다.

문 33. 위의 상황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B사업을 세 번째 해에 시작하고 C사업을 최종년도에 시행한다.
- ② A사업과 D사업을 첫 해에 동시에 시작한다.
- ③ 첫 해에는 E사업만 시작한다.
- ④ 첫 해에 E사업과 A사업을 같이 시작한다.
- ⑤ D사업을 첫 해에 시작한다.

문 34. 위의 상황을 만족시키면서 B사업을 반드시 첫 해에 시작해야 하고, 위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중 한 해에만 6조원의 추경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느 해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는가?

- ① 1차년도
- ② 2차년도
- ③ 3차년도
- ④ 4차년도
- ⑤ 5차년도

문 35.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약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UN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각국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이 협약은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잠정적 특별조치와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조치들을 포함한 특별조치는 ‘금지하여야 할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 기>

- ㄱ.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 ㄴ.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주도록 법률로 정한다.
- ㄷ.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 임금을 받도록 임금을 인상한다.
- ㄹ.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 ㅁ. 현재 여성교사가 많은 상태에서 교사 채용 시 일정한 비율 이상을 남성에게 할당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문 36.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지역사회 전문가를 단위 학교에 한 명씩 두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광역 교육청 차원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프로그램 운영에 지역사회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전문 평가기관이 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학교 간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업무 중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던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바뀌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보 기>

- ㉑. 프로그램 관련사업의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 ㉒. 시·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 ㉓. 프로그램을 단위 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 ㉔. 단위 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과정에 프로그램 담당자를 참여시킨다.

- ① $\neg$
② $\exists$
③ $\neg, \perp$
④ $\neg, \exists$
⑤ $\sqsubset, \exists$

문 37.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고 한다. 국민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속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며,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1948. 5. 11)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비록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1948. 7. 17)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 <보 기>

- ㄱ. 북한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출생시기에 관계 없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ㄴ.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은 국적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ㄷ.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가능한 조치이다.
- ㄹ.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므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다.
- 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을 여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행 중인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① $\neg$
② $\sqsubset$
③ $\neg, \sqsubset$
④ $\sqcup, \sqsubset$
⑤ $\neg, \sqsubset, \sqcup$

문 38.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때 <보기>의 경우 지체기간은?

<지체일수 산정방법>

가. 계약기간 내에 준공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기간 경과 후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
- 불합격판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보완지시를 한 경우, 계약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 산정

나.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준공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검사의 합격 여부 및 보완지시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

- <보 기>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A 사업의 계약기간은 2007년 1월 5일부터 2007년 11월 4일까지이다. 이 사업을 낙찰 받은 X사는 같은 해 10월 15일 준공검사 요청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보완지시를 받은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보완작업을 수행하여 같은 해 11월 10일에 재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재검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19일에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았다.

- ① 10월 25일 ~ 11월 10일 ② 10월 25일 ~ 11월 19일
③ 11월 4일 ~ 11월 19일 ④ 11월 5일 ~ 11월 19일
⑤ 11월 11일 ~ 11월 19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정부는 2007년부터 역모기지론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시가격 8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중산·서민층으로 한정된다.

역모기지론 운영방법에 의하면,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과 가입 당시의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월 지급금액 산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때처럼 감정가(시세 수준)를 기초로 한다. 예를 들어, 감정이 8억원짜리 주택을 만 70세에 맡기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되고, 같은 주택을 만 65세에 맡기면 매달 186만원을 받게 된다. 감정이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면 가입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은 △만 65세 93만원, △만 68세 107만원, △만 70세 118만원 등이 된다.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주택시세를 재평가하여 조정된다.

정부가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2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등이다. 다만, 등록세 면제는 감정이 5억원 이하 집에 해당되며, 나머지 3개의 혜택은 감정이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역모기지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대출하는 금융상품

문 39. 역모기지론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만 65세 이상인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60%로서 만 30세 미만의 24%, 30대의 47%, 40대의 67%에 비하여 매우 높다.
- ㉡. 현재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은 대부분 청장년기에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축적 기회가 적었고 현재도 특별한 소득이 없다.
- ㉢. 한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이 8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어떤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86%에 달하는 노인들이 양로원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 ① $\neg, \vdash$
② $\vdash, \rceil$
③ $\neg, \vdash, \vdash$
④ $\vdash, \vdash, \rceil$
⑤ $\neg, \vdash, \vdash, \rceil$

문 40. 다음 중 위에서 제시한 역모기지론을 시행한다고 할 때 이에 부합하는 것을 고르면? (단, 공시가격과 감정가는 같다.)

- ① 역모기지론으로 월 198만원을 받으려고 만 70세에 신청하는 노인은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② 월 수령액이 만 65세 93만원, 만 68세 107만원으로 차이 나는 이유는 역모기지론 신청자들이 보유한 주택가격을 주변 주택시가의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 ③ 감정가 8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역모기지론을 신청할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④ 전용면적이 110㎡인 주택(감정가는 2억 5천만원)을 이용하여 역모기지론을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2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⑤ 역모기지론의 최초 수령 이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재평가한 주택가격이 신청 당시의 감정가보다 하락할 경우 월 수령액은 최초 수령액보다 작아진다.